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307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4. 11. 14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1997. 4. 7. 접수 제62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  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## 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, C :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나. 피고 D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강진우

별지